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양부남 · 김 현
허성무 · 이정문 · 이춘석
박희승 · 송옥주 · 朴芝源
이재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검·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·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·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·추진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
현행 ‘경무관 이상’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‘총경
이상’으로 확대하고,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
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(안
제2조 등)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하목 중 “경무관”을 “총경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거목부터 더 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하목”을 “하목 및 거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고위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(職)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파. (생 략)	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
하. <u>경무관</u> 이상 경찰공무원	하. <u>총경</u> 이상 경찰공무원
<u><신 설></u>	거. <u>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</u>
<u>거. ~ 더.</u> (생 략)	<u>너. ~ 러.</u> (현행 거목부터 더목가지와 같음)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)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“수사처”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1호다목, 카목, 파목,	2. -----

<u>하목</u> 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 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· ③ (생략)	<u>하목 및 거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